

# 학교법인 동서학원

## 2020학년도 제4차 이사회 회의록

구 분	이 사	감 사
임원정수	8 인	2 인
재적이사	8 인	2 인
참석이사	6 인	0 인

1. 일 시 : 2020년 8월 28일(금), 오후2시 ~ 3시15분, (회의소집 통보일: 2020년 8월 19일)

2. 장 소 : 법인 회의실

3. 임원 출·결 사항

가. 참석임원

- 이사(6명) : 박동순, 장제국, 추만석, 양상백, 오병태, 이순걸

- 감사(0명) :

나. 결석임원

- 이사(2명) : 임호진, 강정호

- 감사(2명) : 양한석, 문승엽

4. 회의안건

(1) 심의안건

1) 법인정관 변경 심의 건

2) 법인 상임이사 보수 조정에 관한 심의 건

3) 동서대학교 2020-2학기 전임교원 새로임용 심의 건

4) 동서대학교 적립기금(장학) 운영 변경 계획(안) 승인 심의 건

5) 동서대학교 민석도서관 불용자료 폐기(안) 승인 심의 건

6) 동서대학교 교원인사규정,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, 수당규정 개정(안) 심의 건

7) 부산디지털대학교 기자재 및 비품 폐기(안) 승인 심의 건

(2) 보고사항

5. 회의내용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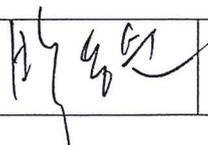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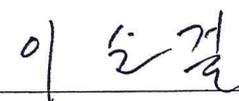
(1) 이사장의 사회로 참석인원을 점검한 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최하다.

(2) 이사장은 회의 안건이 동서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,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, 수당규정 개정(안)에 대해 이사회에서 승인받고자 하는 심의 건이라고 설명한 후 토의 및 결의에 들어가다.

6. 토의 및 결의: 동서대학교 교원인사규정,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, 수당규정 개정(안) 심의 건

(1) 이사장은 오늘 회의 안건인 동서대학교에서 승인 요청한 교원인사규정,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, 수당규정 개정(안)에 대해 서이남 행정실장에게 자세한 설명과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.

(2) 서이남 행정실장은 동서대학교에서 승인 요청한 교원인사규정은 겸직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하고,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은 조기 퇴직수당 지급시 촉진수당 지급을 명문화하고, 수당 규정은 정근수당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한다고 관련 규정 개정(안) 신 구대비표를 참조하여 자세히 설명하다.

간서명 대 표	이사장		이사		이사	
------------	-----	---	----	--	----	---

(3)오병태이사가 승인 요청한 규정을 검토한 후 원안대로 동의를 표하자, 양상백이사가 오병태이사 동위에 재청, 이순걸이사가 삼청, 나머지 이사 모두가 찬성의 뜻을 밝히므로 동서대학교 교원인사규정,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, 수당규정 개정(안)이 가결되다.

(4)이사장은 이사들의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, 동서대학교 교원인사규정,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, 수당규정 개정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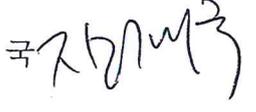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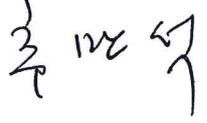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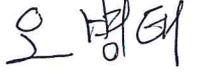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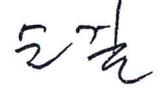
(5)이사장은 이사들에게 간서명 대표를 정하자고 하자, 오병태이사가 이사장, 이순걸, 양상백이사를 추천하자 다른 이사 모두가 찬성하므로 가결되다.

7. 폐회 : 이상과 같이 토의 및 결의를 마치고, 추만석이사의 동의로 3시 15분에 폐회를 선언하다.

위 사실을 확인함.

2020. 8. 28.

학교법인 동서학원 이사회

이사장 박동순		이사장 제국	
이사 추만석		이사 오병태	
이사 양상백		이사 이순걸	

# 동서대학교

## 교원인사규정 개정(안)

### (1) 규정 개정 사유

• 미허가 겸직 관리 강화

### (2) 규정 개정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	비고
제3조(겸직금지)	제3조(겸직금지) ③ <u>학술활동을 위한 학술단체 또는 학술협회 등의 비상근 임원은 사후에 총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u>	항 신설

### (3) 부칙

-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
### (1) 규정 개정 사유

• 조기퇴직수당 지급시 축진수당 지급 명문화 [교육부 종합감사 지적사항]

### (2) 규정 개정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	비고
제4조의2(조기퇴직수당) ② 조기퇴직수당은 <별표 1>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	제4조의2(조기퇴직수당) ② 조기퇴직수당은 <별표 1>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, 별도의 축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	자구수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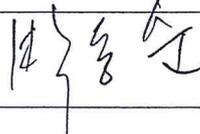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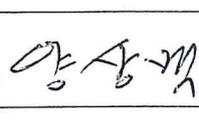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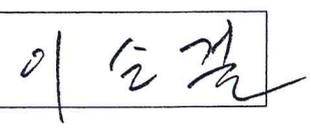
### (3) 부칙

-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수당규정 개정(안)

### (1) 규정 개정 사유

• 정근수당의 지급 및 감액 기준 명확화  
-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

간서명 대 표	이사장		이사		이사	
------------	-----	---	----	---	----	---

(2) 규정 개정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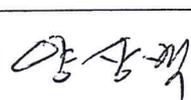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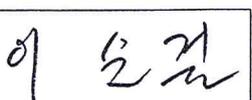
현행	개정	비고
제3조(수당의 종류) 본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 ① 교육공무원 및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 1. 정근수당: [별표1]	제3조(수당의 종류) 본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 ① 교육공무원 및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 1. 정근수당: [별표1]	별표 개정

(3) 부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정근수당

		(단위: %, 지급월)				
현행	근속년수	지급액		근속년수	지급액	
	1년 미만	월 본봉의 0% 해당금액		7년 미만	월 본봉의 30% 해당금액	
	2년 미만	월 본봉의 5% 해당금액		8년 미만	월 본봉의 35% 해당금액	
	3년 미만	월 본봉의 10% 해당금액		9년 미만	월 본봉의 40% 해당금액	
	4년 미만	월 본봉의 15% 해당금액		10년 미만	월 본봉의 45% 해당금액	
	5년 미만	월 본봉의 20% 해당금액		10년 이상	월 본봉의 50% 해당금액	
	6년 미만	월 본봉의 25% 해당금액		지급월	7월, 1월	
	지급대상	1) 1월 지급: 전년도 1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자 2) 7월 지급: 6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자				
월 본봉액*년수%						
개정	(단위: %, 지급월)					
	근속년수	지급액		근속년수	지급액	
	1년 미만	월 본봉의 0% 해당금액		7년 미만	월 본봉의 30% 해당금액	
	2년 미만	월 본봉의 5% 해당금액		8년 미만	월 본봉의 35% 해당금액	
	3년 미만	월 본봉의 10% 해당금액		9년 미만	월 본봉의 40% 해당금액	
	4년 미만	월 본봉의 15% 해당금액		10년 미만	월 본봉의 45% 해당금액	
	5년 미만	월 본봉의 20% 해당금액		10년 이상	월 본봉의 50% 해당금액	
	6년 미만	월 본봉의 25% 해당금액		지급월	1월, 7월	
지급대상 및 감액기준	1) 1월: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교직원 2) 7월: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교직원 3) 1), 2)의 지급대상기간 중 정계 및 휴직처분을 받은 교직원의 경우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(정근수당) 2항의 내용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.					
월 본봉액*년수%						

간서명 대표	이사장		이사		이사	
-----------	-----	---	----	---	----	---